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관세청은 관세와 관련된 법률정보의 연동을 위해 개발한 전자 통관 절차 관련 내용을 2022년 03월 10일 공지하였음. *[붙임1] 공지 원문 번역본 참고
 - 공지일: 2022년 03월 10일
 - 시행일 : 2022년 03월 15일
- 태국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관세 면제 및 감면 특혜 대상국으로 말레이시아, 미얀마를 추가하여 공지하였음.
 - 시행일 : 2022년 03월 18일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3.1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 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 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IV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 관련 공지

관세청 공지

No.32/2565

제목: 관세와 관련된 법률정보의 연동에 대한 전자 통관 절차 (2)

통관 전 수입품의 검사 소요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고, National Single Window (NSW)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은 Customs Act. B.E. 2560 (2017)의 51조 및 B.E. 2557 수입, 수출, 운송 및 물류를 위한 전자 데이터 링크에 관한 국무총리실 규정 의 4조 및 7조 3절에 근거하여 관세청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고시한다.

제1항 관세청 공지 No.131/2561의 관세와 관련된 법률정보 연동에 대한 전자 통관 절차 (1)의 제4항 문장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대체한다.

“제4항 관세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품목의 검사는 수출입신고서에 의거, 면허 또는 전자증명서 정보가 동일한 경우는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서 신고 번호를 발급 해주고, 수입업체 또는 수출업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통보하고 해당 조직에 관련 정보를 알릴 것이다.”

(4.1) 수입신고서

(4.1.1) 위험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품의 경우는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서 신고번호를 발행해주고 수입자에게 “HS코드, 물품 가격, 품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항 또는 공항에서 품목 수령 가능”이라는 내용을 알릴 것이다.

(4.1.2) 위험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품이지만 면허 또는 전자 증명서 발효일 이전에 수입한 경우는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서 신고번호를 발행해주고 수입자에게 “세관에서 품목을 통관하기 전 세관공무원과 면허 또는 전자 증명서 정보 확인 필요” 라는 내용을 알릴 것이다.

(4.1.3) 위험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서 신고번호를 발행해주고 수입자에게 “수입항 또는 공항에서 HS코드, 물품 가격, 및 물품 확인 필요”라는 내용을 알릴 것이다.

(4.1.4.)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의 HS코드 또는 관세 가격 (Assessment Request Code) 문제로 세관원과 확인 요청 원하는 경우는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서 신고번호를 발행해주고 수입자에게 “수입항 또는 공항에서 세관공무원과 확인 ”이라는 내용을 알릴 것이다.

(4.1.5)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지정 수입항 또는 공항 외 통관 요청 (Inspection Request Code)의 경우는 수입신고서가 위험조건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서 신고번호를 발행해주고 수입자에게 “HS코드, 물품 가격, 품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항 또는 공항에서 품목 수령 가능”이라는 내용을 알릴 것이다.

(4.1.6)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지정 수입항 또는 공항 외 통관 요청 (Inspection Request Code)의 경우는 수입신고서가 위험조건에 적용되는 경우,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서 신고번호를 발행해주고 수입자에게 “수입항이나 공항에서 HS코드, 물품 가격, 및 물품 확인 필요”이라는 내용을 알릴 것이다.

(4.1.7) 수입신고서에 대한 관세와 관련된 기관의 면허 또는 전자 증명서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서 신고번호를 발행해주고 수입자에게 “허가서 또는 전자 증

명서의 발급 기관과 서류 또는 물품 확인 필요”이라는 내용을 알릴 것이다. 증명서 발급 기관은 검사 완료하는 즉시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수입자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관세 컴퓨터 시스템이 48시간 내에 결과를 받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1.1) 증명서 발급 기관은 “통과 승인” 결과를 통보한 후 관세 컴퓨터 시스템은 수입자에게 “수입항 또는 공항에서 물품 수령”이라는 내용을 알릴 것이다.

(1.2) 증명서 발급 기관은 “통과 미승인” 결과를 통부 후 관세 컴퓨터 시스템은 수입자에게 “수입항 또는 공항에서 세관공무원과 확인 필요”라는 내용을 알릴 것이다.

(1.3) 증명서 발급 기관은 “조건부로 승인” 결과를 통부 후 관세 컴퓨터 시스템은 수입자에게 “물품 수령 전 세관공무원과 확인 필요”라는 내용을 알릴 것이다.

(2) 관세 컴퓨터 시스템이 48시간 내에 면허 또는 증명서 발급 기관의 검사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관세 컴퓨터 시스템은 수입자에게 “물품 수령 전 세관공무원과 확인 필요”이라는 내용을 알릴 것이다.

(2.1) 수입자가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품목 수령을 원하는 경우 관세공무원에 물품 통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공무원은 해당 요청사항을 고려해 관세청의 위험 여건 관리 시스템 이하 위험 조건에 따라 검토한다. 관세공무원이 통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수입자에게 물품 통관을 시킬 권한을 가진다. 관세공무원이 통관 시킨 후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 품목 통관 관련 정보를 기록할 것이다.

(2.2)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 48시간 후에 검사 결과를 받은 경우는 관세공무원은 관세청의 위험 조건 관리 시스템 이하 위험 조건에 따라 검토한다. 관세 관련법에 대한 검토 후 관세공무원은 관세 컴퓨터 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물품 통관을 시킬 권한을 가진다.

제2항 본 공지는 2022년03월15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03월 10일
Mr. 파차라 아난따싹
관세청 사무국장